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846
------------	------

2020. 9. 4.
도시계획관리위원회

I.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8월 12일 임만균 의원 발의
- 나.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20.9.4. 상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임만균 의원)

1. 제안이유

- 공공건축물 건립시 설계자의 의도를 설명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공건축의 설계의도 구현을 도모하고, 서울시 정책의 정확한 의도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전달하여 정책구현의 신뢰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건립시 설계의도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입하도록 함(안 제

9조제5항 신설)

- 설계의도 표지판은 설계자가 디자인을 하되, 규격·재료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건립 시, 설계의도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입하게 하려는 것임.
- 현행 제도에서는(건설산업기본법,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¹⁾ 건설공사표지판 등을 통해 주로 건설공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건물설계의 이해를 돕는 정보는 부재한 상황에서,
이 개정조례안은 상당 규모가 있는 공공건축물에 한해²⁾ 건설공사표지판에 설계의도를 추가 기입하거나 또는 설계의도 표지판을

1) ※ 건설산업기본법(검토보고서 붙임1)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사 등을 적은 표지판(석재 또는 금속)을 보기 쉬운곳에 영구적으로 설치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검토보고서 붙임1)

- 공공시설 또는 공공건축물을 설치 또는 건립할 시, 그 비용 등을 포함한 정보를 표지판 등에 명기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 의무대상(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도로 설치토록 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입하여(검토보고서 붙임2) 해당 공공건축물의 설계의도가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공공건축물을 포함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설치 정보를 표지판에 기입토록 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에, 이 개정조례안에 따른 ‘설계의도’를 공개범위에 추가하여(안 부칙 제2조) 관련 조례 간의 일관성·연동성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되며, 관련하여 해당부서는(재무국) 특이사항 없다는 의견임.

- 서울시는 2014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의무화하여³⁾ 공공건축물 디자인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여 왔고, 노들섬이나 서울혁신파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비롯해 다양한 공공건축물이 조성되고 있으나,

※ 최근 3년 서울시 발주 공공건축물(설계비 1억원 이상) 준공 현황 (자료: 도시공간개선단)

'19년 준공 건물	'18년 준공 건물	'17년 준공 건물
13개소 (노들섬, 서울생활사 박물관 리모델링, 소방행정타운 등)	10개소 (봉제박물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혁신파크 1단계 등)	17개소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서울 재사용플라자, 세운상가 공공공간 등)

설계공모 당선작의 설계의도나 공공건축물의 설계개념(concept)은 설계공모 결과가 발표되거나 건물 준공 시에만 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홍보되는 수준으로서, 시민들이 평상시 공공건축물에 접

3) 설계공모 의무대상 : 설계비 추정가격 2.1억원('14.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 1억원('19.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하여 설계의도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표지판을 통한 설계의도의 지속적인 전달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공공건축물 디자인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 효과를 높이고, 각 공공건축물과 관련된 서울시책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표지판 뿐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통한 설계의도의 전산화 관리,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쉽게 접근하여 건축물 디자인을 이해할 수 있고, 건축물 개량·보수·리모델링 등에도 기존의 설계의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등은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기입한 표지판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준공표지판과 별도 설치
2. 준공표지판에 혼합하여 설치

⑥ 제5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해당 공공건축물의 설계자가 설계하고, 표지판의 규격·재료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① ~ ④ (생략)</p> <p><u><신설></u></p>	<p>제9조(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① ~ ④ (현행과 같음)</p> <p><u>⑤ 시장등은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기입한 표지판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u></p> <p><u>1.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준공표지판과 별도 설치</u></p> <p><u>2. 준공표지판에 혼합하여 설치</u></p> <p><u>⑥ 제5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해당 공공건축물의 설계자가 설계하고, 표지판의 규격·재료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4조제2</p>
<p><u><신설></u></p>	

현행	개정안
	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도